

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

의안 번호	3 - 21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0. 5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제1단계 구조조정시 우리시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이 모두 감축되어 동 조례중 방법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하던 방법수당의 지급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 관련 조문을 삭제함 (안 제3조 및 별표3).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및 [별표3]을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3조(방법수당) 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</u> <u>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에게</u> <u>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,000</u> <u>원으로 한다.</u> <u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공</u> <u>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경력</u> <u>연수에 따라 [별표3]에 의한 금액을 가</u> <u>산 지급할 수 있다.</u>	<u><삭제></u>